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12호 2021. 10. 14.(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24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259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260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2, 행정7122)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24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판지2길 24-9	구유동 309-1	2021. 10. 14.	건축물 멸실
판지2길 24-10	구유동 309-2	2021. 10. 14.	건축물 멸실
매곡로 149	매곡동 417-1	2021. 10. 14.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10.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259호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 울산지역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출과 수거가 용이한 시간 때로 배출시간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매일 일몰 후부터 다음날 04:00사이'를 '매일 일몰 후부터 24:00사이'로 개정
- 나.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지정된 수거요일 전날 일몰 후부터 04:00까지'를 '지정된 배출일 일몰 후부터 24:00까지'로 개정

3. 관계법령

- 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 나.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3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환경미화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1)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미화과
- 2) 팩 스 : 052-241-780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환경미화과(052-241-780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다음날 04:00”를 “24:00”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2항 중 “수거요일 전날”를 “배출일”로, “04:00”를 “24:00”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보관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환경미화를 위하여 매일 일몰 후부터 <u>다음날 04:00</u>사이 배출자의 출입문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압착기 등으로 압착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공휴일 전날 일몰 후부터 공휴일 일몰 전까지는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 설치된 분리보관용기에 수시 배출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지정된 <u>수거요일 전날</u> 일몰 후부터 <u>04:00</u>까지 구청장이 지정한 거점장소에 설치된 분리보관용기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 ----- ----- <u>24:00</u>----- ----- ----- ----- ----- ----- ----- ----- -----</p> <p>②----- ----- ----- ----- <u>배출일</u>----- <u>24:00</u>----- ----- -----</p> <p>③ (현행과 같음)</p>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260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명확화, 사후 관리 강화,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재위탁”, “재계약”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3항, 안 제2조제4항)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 의회 동의안 등 내용 구체화(안 제4조의3, 안 제4조의4 신설)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안 제4조의5 신설)

-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수탁기관 선정기준 명확화(제5조)
 -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사전 공개 규정(제6조제2항)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7조제4항)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 장치,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 제7조의4 신설)
-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안 제16조 신설)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제17조 신설)
- 수탁기관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5제2항제7호)
 -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규정(안 제5조 제4항)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 출 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 3) 전자우편(E-mail) : ginger@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수탁기관이 위탁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연속해서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4조의3(의회의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5(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3. 제6조제1항의 예외조항에 따른 수의협약 적정성 검토
4.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적정성 검토
5. 제17조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6.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
7.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8.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4항, 제5항 중 “위원회는”을 각각 “심사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노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 분야 관계 공무원

⑧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4(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위탁기관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재위탁의 금지)”를 “(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2조의 지휘·감독 결과, 제14조에 따른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u>위탁에</u></p> <p>관한 조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p>	<p>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p> <p><u>민간위탁에</u> 관한 조례</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재위탁</u>”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p> <p>4. “<u>재계약</u>”이란 수탁기관이 위탁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연속해서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p> <p>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제></p>

한 경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는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삭 제>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신 설>

제4조의3(의회의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 3.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탁사무명

<신 설>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5(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3. 제6조제1항의 예외조항에 따른 수의협약 적정성 검토

4.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적정성 검토

5. 제17조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 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불법경영 및 부당노동행위 전력 여부
- 5. 환경보호, 장애인·여성·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책임의 실천수준
- 6.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 ----- 인정되는 경우에는 -----.

<신 설>

6.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

7.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8.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 -----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

②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7조(수탁기관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의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 설>

③·④ (현행 제2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 분야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는 -----.

⑤ 위원회는 -----.

⑥ (생략)

<신설>

<신설>

⑤ 심사위원회는 -----.

⑥ 심사위원회는 -----.

⑦ (현행과 같음)

⑧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들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전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신 설>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7조의4(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위탁기관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제15조(재위탁의 금지) (생략)

제16조(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리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리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사유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이의신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 (현행과 같음)

제16조(성과평가) ①구청장은 민

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생 략)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2조의 지휘·감독 결과, 제14조에 따른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현행 제17조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